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저해하는 사례 연구

-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Study on Intellectual Freedom in American Libraries

이 명 희(Myeong-Hee Lee)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의 철학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서구의 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떻게 규제되는지를 음란물의 판단 기준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례가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또한 상충되는 판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인터넷에서의 음란물의 규정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검열기능인 PICS의 배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통신품위법II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Intellectual Freedom"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library user services in Western countries. Particularly, this paper pursues to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It also studies how "the freedom of expression" was restrained by pursuing the definitions of "pornography" and "obscenity" in terms of the court's opin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lso, PICS and the Communication Decency Acts were discussed.

키워드: 도서관의 지적자유, 음란물, 표현의 자유, 통신품위법
intellectual freedom, freedom of expression, pornography, PICS, CDA

*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mehlee@sangmyung.ac.kr)
논문접수일자 2001년 11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01년 12월 5일

1. 서론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와 철학적 근거들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과 이들이 제한되는 경우의 법이론을 살펴보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음란물의 규정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와 도서관에서의 검열에 대한 지적자유를 고양하기 위한 노력과 유해음란물로부터의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처 방안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도서관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철학적 기반을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 활동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개별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이후의 도서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지침을 구하는데 연구의 필요성 및 의미를 두고자 한다. 특히 지적자유원리의 고양을 통해서 도서관 봉사이념의 기반원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도서관 문화의 탄탄한 지적 토양의 배양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도에서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여기서 밝혀진 사실과 이론들은 보다 나은 도서관 봉사를 위한 하나의 작은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비록 아직까지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는 지적자유 문제에 관해 절박한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이 분야에 관한 몇몇의 연구논문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정현태, 1999; 김영기, 1999),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실태파악과 대처방안 등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 사용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음란물을 중심으로 한 지적자유를 저

해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들을 근거로 지적자유에 관한 우리나라 도서관 활동의 제반 여건을 파악하는데 또는 국내의 여러 현장 사례와 더불어 장치의 도서관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장치는 한국 도서관협회를 비롯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에 의해 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광범위한 실태 파악 등이 있어야 하겠고, 이를 위해 동기를 제공하는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의 필요성은 강조된다고 하겠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도서관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서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관한 제고를 위해 이의 중요성 확산 및 보급을 위한 노력과, 그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관련 사항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지속적인 조사가 요망된다 하겠다.

1.1 연구방법 및 내용

본 연구는 도서관 봉사의 이론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적자유와 철학적 근거들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 제한되었는지를 미국의 다양한 법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표현의 자유와 상충되는 음란물의 규정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 따라 도서관에서는 검열로부터 지적자유를 고양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유해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여 왔는지, 특히 인터

넷이 범람하는 현대 사회에서 음란물로부터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색해보았다. 뿐만 아니라 실제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가 상충된 사례를 대법원의 판례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특히 유해음란물 필터링 여과장치인 PICS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과 통신품위법(CDAI)에 대한 도서관의 견해도 살펴보았다.

1.2 선행연구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문제에 관해 먼저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도서관 활동의 주요 기반이념으로 발전시켜온 나라는 미국이며,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도 미국에서 진행되었다.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Asheim(1953)은 도서관자료에서 때때로 혼동되어 사용될 수 있는 자료의 선정과 검열에 관한 차이를 인정하고 이의 구분을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도서관 사서가 예산과 공간상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자료를 모두 구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서의 임의적인 선택에 의해 자료를 선정하여 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수집하는 과정에서 사서가 진정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 양서를 선택하여 구입하는 것은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하에 사서 임의로 이용자에게 불온할 것이라든지 이용자에게 읽혀서는 안되겠다는 판단 하에 그 자료를 선택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검열로 규정하였다.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를 학문적으로 다룬 연구는 공공도서관 사서의 자기검열을 주장하였던 Fiske(1959)에 의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캘리포니아 지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 사서에게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선정업무 과

정에서의 자기검열현상을 발견하였다. 비록 지적자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서라하더라도 면접에 응한 33%의 사서가 의식적으로는 책의 내용이나 저자에게 문제의 소지가 있는 책을 의도적으로 선정과정에서 제외시키는 자기검열 현상을 지적하였다. 또한 논쟁적인 문헌에 대하여는 보다 개별적이고 적법한 이유를 근거로 잠재적 검열을 행함을 발견하고 도서관내 자료 선정업무 과정에서 사서들의 자기검열에 의한 검열현상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혀낸 실증적인 연구로 중요하게 인정되고 있다.

Busha(1970)는 미국 중서부 5개 주 공공도서관 사서들에게 사회에서의 자유라는 추상적 개념에 대한 태도와 검열에 대한 태도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이론적으로는 사서들이 지적자유에 대한 강한 지지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실제 검열압력이 발생했을 때는 그러한 의식과 분리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검열태도에 대해 응답한 사서들의 약 60%가 자기검열행위뿐 아니라 실제 발생하는 검열현상에 대해 반대하지 못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전문인으로서의 확고한 윤리의식을 현실세계에서 보여주지는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전통적으로 지적자유는 자유로운 표현을 위해 검열에 반대하는 차원이었지만 최근에는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청소년 보호차원에서의 상업적 선정적인 것과 음란물을 배제함으로써 적극적 의미의 청소년의 보호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Wirth는 1995년 미국내 공공도서관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 응답자의 지적자유에 대한 인식이 검열에 대한 반대로부터 청소년을 음란물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의미의 지적자유로 전환하게 된 경

우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음란물을 접할 기회가 많은 현실 여건에서 사서들의 적극적 의미에서의 지적자유를 보여주고 있는 사례이다. Wirth의 연구결과, 약 90% 이상의 응답도서관에서 음란성 여부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마돈나의 사진집 <섹스>를 이용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구입하지 않았음을 밝혔다.

Niosi(1998)의 연구에서도 조사대상 도서관에서 아동용으로 구입한 자료 중 임신, 동성애, 마약, 매춘, 근친상간 등을 현실감 있게 묘사한 자료에 대해서는 성인용 서가에 별치해 둘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적극적 선정에 참여한 Wirth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는데 Niosi는 이들 자료에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것은 잠재적 검열행위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후 문제 제기를 위해서는 도서선정정책의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도서선정정책을 가짐으로써 지적자유에 대한 도서관의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지적자유에 철학적 근거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지적자유는 도서관 윤리선언의 근간이 되어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언론과 출판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도서관계에서도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지적자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양에서 일찍부터 발달되어 왔는데 이에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와 밀의 자유론을 비롯한 서구의 중요한 사상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밀턴이 1644년에 출간한 <아레오파지티카>는 인권의 검열에 도전한 책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레오파지티카>는 밀턴의 저술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글로서 J. S. 밀의 자유론(On Liberty)과 더불어 표현의 자유에 관한 고전적 문헌이 되었다. 이러한 <아레오파지티카>가 구체적으로 요구한 것은 의회가 출판의 허가명령을 폐기하는 것이었다. 그의 주장은 서론, 본론, 결론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 그는 의회에 대해 찬사와 기대를 표시하면서 그가 <아레오파지티카>를 쓰는 이유가 공공의 이익을 원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본론은 허가제를 반대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결론은 관용과 자유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본론에서 논한 그의 허가제 반대 논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허가명령은 로마의 교황주의자들이 고안한 반역사적 제도이며, 둘째 출판의 검열과 허가제는 서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여 지적발전을 저해한다. 셋째, 허가명령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넷째, 허가명령은 진리의 본질적 속성 및 원리와 배치된다는 것이다. 밀턴은 허가제와 검열을 반대하는 논리를 이와 같이 제시한 후 결론부분에서 검열과 허가대신 관용으로 자유를 주장하였다.

<아레오파지티카>는 출판의 자유를 진리의 발견에 그리고 진리로 충만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으로 인식한다. 즉 출판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밀턴의 논리는 '진리발견'이고, '신성한 공동체'의 건설이다(임상원, 1998). 그렇다고 해서 밀턴의 주장이 법 자체를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고 법으로는 규제 불가능한 또 규제해서는 안 되는 특정한 출판과 독

서행위의 영역에 대한 법의 통제에 반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인간과 서적 그 자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은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해악적이거나 명예훼손의 것이라면 분서와 강제집행관이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였다. 밀턴이 〈아레오파티카〉에서 주장한 자유는 '지적탐구의 자유'이고 '기독교적 자유'였다고 말한다. 때문에 밀턴이 반대한 것은 이런 '지적 탐구의 자유'와 '기독교적 자유'를 억압하는 허가과 검열을 반대한 것이다. 이들은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만이 규제할 수 있는 자유라고 믿었다.

플라톤은 어린이의 영혼, 정신의 바른 교육을 위해서 그들에게 읽혀질 문학을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플라톤의 문학에서 좋은 것을 수용하고 나쁜 것은 삭제하면 인간은 어린 시절에 그 성격이 형성되므로 검열된 문학을 통해 인간이 도덕적 완전인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은 기본적으로 인간 본성에 대해 백지설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선은 오직 신만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인간 생활의 다반사는 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다. 플라톤이 말하는 검열에 의해서 표현의 자유가 상실된 사회에서는 또한 자유로운 토론도 불가능해질 것이다.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도달하려고 했던 인간상은 결국 완전한 선의 존재, 즉 신 또는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성숙이란 외부 세계로부터의 통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 내부의 성숙의 요소들을 자아에서 타아, 세계로 확대해 가며 오히려 만물의 비밀들을 풀어가며 성숙하는 것이다.

자유론(On Liberty)에서 밀이 주장하는

기본적인 자유는 양심의 자유 즉 사상과 감정의 자유, 취미와 직업의 자유, 단결의 자유 등이다.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자유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는 그 사회가 어떤 종류의 사회이건 자유로운 사회가 아니다. 밀은 이와 같은 자유들이 행복추구의 자유로 귀결된다고 보고 자유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일한 자유를 우리들 자신의 방법으로 우리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유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상과 토론의 자유에서 만일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같은 의견인데, 단 한 사람이 그것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류가 한 사람을 침묵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소수의 의견도 인정하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다. 이 말 속에는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며, 더욱 정확히 말하면, 밀은 모든 일을 다수결의 원칙으로 해결하려는 다수파의 언론 탄압은 절대자에 의한 언론 통제보다 더욱 나쁘다고 보고 있다. 왜냐 하면 그와 같은 행위는 창조적인 소수의 의견을 말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밀은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만일 다른 사람의 의견이 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 그리고 그 의견이 틀린 것이라 하여 그것을 억압한다면 우리는 그 논쟁 속에서 얻을 수 있는 한층 더 명확한 진리를 알 수 없게 된다".

사람에게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유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자유는 엄청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제약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우선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다음으로 사람들은 사회와 사회 구

성원들을 외부의 위협이나 간섭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자기 몫의 일을 해야 하며 자기 몫만큼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자유론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에서 밀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어리석은 말이나 행동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그 자신이 엄청난 손해를 보는 말과 행동이라고 해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만 않는다면 그것을 허용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억제는 억제는 그것이 억제라는 점에서 하나의 악이다. 따라서 사회 역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의 이해를 침해하거나 사회의 존립을 해치는 행위가 아니라면 사회 구성원들을 억압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역할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다. 이와 같은 생각은 자유주의를 옹호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개인은 자연 권적 권리로서의 자유 및 소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그에 대해서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 있다. 현대의 자유주의자들도 밀이 자유론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이념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밀의 자유주의에 대한 옹호가 그의 공리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도 결국은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그 만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밀의 자유론(On Liberty)은 사회와 집단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게 개인의 가치 더 나아가 개인이 향유해야 할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한 국가의 가치는 궁극적으로는 그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의 가치이다. 개인들의

정신적 확충과 향상이라는 이익을 무시하고 세세한 사무를 처리하는 능력 혹은 경험에서 얻게 되는 사이비 재능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기를 원하는 국가 또는 국민을 위촉시켜 국민을 자기 손으로 좌우할 수 있는 온순한 앞잡이로 만들려고 하는 국가는 비록 그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국민이 위촉되어 있다면 어떠한 위대한 일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가 모든 것을 희생시켜 이룩해 놓은 완전한 관료 기구도 그 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배제해 버린 바로 그 활력의 결여 때문에 결국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권리장전(1689)은 의회 내에서의 언론자유를 보장하였는데 이는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독립선언, 버지니아 권리장전, 매사추세츠 권리선언 등에도 영향을 주었고, 이들을 통하여 다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의 여러 주 중에서 버지니아주의 권리장전(1776)은 다른 주보다 앞서서 천부인권사상을 선언하였다. 이 권리장전은 제 12항에서 출판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 정신은 미국 헌법에 전수되어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 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오늘날 권리장전이라는 말은 일반화되어, 각국의 헌법전 속에 규정된 인권을 보장하는 조항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3. 표현의 자유와 이의 제한 이론들

고전적인 의미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의 정의는 사상, 의견을 문자나 언어로 불특정 다수에

게 발표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해 현대적인 언론 출판의 자유는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취재의 자유와 편집과 편성권 및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함한다. 표현의 자유로 압축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가 영국에서는 1649년의 인민협약에서 선언되었고 1965년 검열법의 폐지로 확립되었다. 그 후 176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 1791년의 미연방헌법,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 등에서 표현의 자유가 규정된 이래 오늘날 각 국가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다.

현대에서 언론 출판이 가지는 자유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 또는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므로 개개인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을 유지한다. 둘째, 민주시민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사상과 의견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사상과 의견의 형성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가 단순히 정보의 제공이 아닌 알 권리, 액세스권 및 반론권과 같은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셋째, 민주정치체제는 사상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비로소 가능하며 민주적인 정치적 법적 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자유로운 사상전달의 수단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고전적 의미의 사상 또는 그 전달이외에 알 권리 액세스권 반론권 언론기관 설립권 언론기관의 자유까지도 그 내용으로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알 권리란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일반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권리를 말한다. 즉 신문 잡지 방

송등 불특정의 다수인으로부터 개방되어 사상과 의견, 지식을 형성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그것은 개인에게는 공공기관과 사회집단으로부터는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그에 관한 취재를 자유로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들을 권리, 입을 권리, 볼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국민의 알 권리는 매우 비중이 크고 귀중한 국민의 기본권이기는 하나 다른 기본권이나 국가적 사회적 법익과 상충 또는 마찰을 일으킬 경우에는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그러나 그 제한은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액세스권이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기관 또는 정보에 대한 이용접근 및 알 권리를 말한다. 한편 국가에 대한 액세스권은 정보공개 청구권을 의미하며, 언론기관에 대한 액세스권은 언론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것을 요구하는 언론기관에 대한 알 권리와 정보수용자인 일반 국민이 정보 발신자인 언론기관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표현의 자유란 국민이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정신적, 정치적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먼저 이 개정헌법제1조가 어떻게 해석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는 과연 제한될 수 있는지, 또한 있다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제한될 수 있는가 라는 점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이에 관한 이론이 다양한 논쟁 속에서 전개되어 왔는데 이 이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편, 1993).

표현의 자유 우월성 이론(preferred posi-

tion balancing theory):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상충할 때 표현의 자유 쪽에 더 우월한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국민의 모든 기본권의 유지는 언론, 출판의 자유의 유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특유의 법철학의 지지를 받아 법원 판결문에 이 원리가 인용되거나 명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기본적 조류 중의 하나가 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비판과 사회윤리 등 비정치적 언론, 출판 구분이론: 언론, 출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만큼 그 법치과정 즉 정치적 비판은 개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공중도덕과 사회 윤리 등에 관련된 비정치적 언론, 출판의 자유는 상대적인 것으로 타 기본권, 기타 가치와 비교하여 제한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언론, 출판기관에의 적극적 접근권과 그 이용권(Access theory): 1960년대 중엽 법학자들에 의해 주창된 이론으로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국민이 자기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 출판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으며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적극적 이론이다. 이 이론은 1960년대 중엽 미국에서 신문사수가 줄어들고 신문, 방송 등 언론 기업 등이 집중화·독점화되는 경향이 있어 일반국민이 점점 의사표현 및 전달수단을 얻기가 힘든 상황에서 국민 개개인의 사상과 의사를 발표할 기회를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4. 금서와 음란물

출판매체의 육성이나 국민독서 진흥정책은 선진 각국마다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중시되어 온 분야이다. 유해도서 규제제도도 다른 면에서 보면 그 나라의 독서진흥정책의 일환임을 알 수 있다. 즉 유해도서를 규제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서를 읽는 것을 권장하고 불량, 저질 간행물을 출판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양서를 발간하는 출판기업을 보호해 주는 정책이며 책에 대한 국민의 애정과 신뢰를 두텁게 해 줌으로써 독서진흥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다. 금서정책은 보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유해도서 규제정책이다.

금서관 발행이 금지되거나 발매가 금지된 책을 말한다. 출판물을 규제하는 이유는 국가나 체제의 권위에 도전해서 그 위엄을 해치고 안전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행해진다. 특정 책의 내용이 기성체제에 도전하는 위협으로 간주될 때 그 책은 탄압의 대상이 되어 금서조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금서조치는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반체제적인 정치관계책으로 이는 정치적으로 기성체제 및 기성제도에 대항하여 이를 비판하거나 고발, 개혁하려는 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는 이태올로기성 금서도 포함되는데, 새로운 이념과 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기성체제, 기성권위에 도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냉전시대에는 주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찬양·고무시키는 저서들이 이에 해당했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의 대공황에 즈음하여 발생한 허무주의와 비관주의에 터하여 이러한 기성제도에 대항하는 사조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대표적

인 금서는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이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과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냉전시대와 1950년대 한국전쟁과 메카시 논쟁 등이 불을 붙였던 50년대는 이러한 이념논쟁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이고, 도서관에서의 검열도 극해 달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종교적인 이른바 이단서적이다. 특히 미국의 남부지방에서 강했던 기독교의 교파 중 근본주의를 표방했던 남침례교를 중심으로 종교적 탄압이 극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디즈니사의 유명한 어린이 도서인 <신데렐라>나 <피노키오>등이 마술을 조장하는 사악한 도서라는 이름 하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 많이 불태워졌다. 셋째, 음란관계 도서이다. 그러나 문학성이 높은 예술적인 가치를 지닌 책도 음란도서로 몰아서 금서로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의 대표적인 것이 D. H. 로렌스의 <아들의 연인> 등이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러한 금서조치와 더불어 1950년대와 1960년대까지 사서들의 자기검열 대상이 주로 종교적 도서였다면,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적 금서를, 그리고 1990년대 이후 자기검열의 대상은 반사회적 가치로 표현되는 유해음란물로 바뀌었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사회주의 체제붕괴 이후 조성된 탈 이념적 분위기에 따라 이념자료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희석되면서 상대적으로 사회문화 주제에 대한 관심으로 검열대상이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 및 사회 안전의 정치적 논의에 대한 검열은 어느 정도 체제적 안정성이 확인되고 나면 사회윤리에 대한 검열로 그 비중이 넘어간다는 통상적인 검열현상에 대한 경험적 이론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이다.

냉전시대의 검열의 극단적인 예는 메카시즘의

발현에서 볼 수 있다. 1950년 2월, 미국 위스컨신주의 조셉 메카시 상원의원은 미국 국무부에 205명의 공산주의자가 첩자로서 미국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있다는 폭탄 선언을 하였다. 냉전시대로 대표되는 미·소 양국의 이념 대립이 극에 달한 당시의 상황에서 극우에 반하는 많은 지식인과 노동자의 권리나, 인종 차별에 대한 인권의 주장 등은 모두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단죄되었다. 이 당시 외국 소재 미국 공보관 도서관을 비롯한 많은 도서관의 도서들도 공산주의 서적내지 이념적인 도서라는 이름으로 폐기처분되거나 격리수용되어 이용자들에게 제공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는 검열과 이를 두려워하는 사서들의 자기검열현상이 심하여 자료를 이용하는 이용자와 사서들간에 팽팽한 긴장감이 돌던 시기였으며 자유롭고 공정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던 시기였다. 소위 메카시즘으로 불리는 이 시대의 '마녀사냥'은 정치인뿐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과 자유로운 사상, 학술상의 사조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억압적인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메카시즘이 횡행하는 세상에서는 자유로운 표현이 억압되었다(Rorty, 1955).

5. 음란성 판단기준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미국의 음란물에 관한 규제법제를 파악하려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각종 법률의 조문보다 먼저 각종 음란물 죄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를 추적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 특히 미국법의 법원의 하나는 관습법이므로 법원 특히 대법원

의 판례는 음란물 죄에 관한 연방법의 역할을 해 왔다. 아래에 보여지는 대법원의 판결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씩 변동되어 왔는데, 중요한 사항은 음란물에 대한 판정기준이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청소년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든지 예술작품이라 하더라도 진정한 예술작품과 예술작품인척 하는 것을 구분하여 진정한 예술작품만을 인정하여 주었다(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편, 1993). 이러한 판결문은 연방법의 역할을 하면서 미국의 연방법, 주법 적용의 기준이 되어 왔다. 미국 음란물 죄의 기원은 1663년 영국의 Sedley 사건판결(King v.Sedley)과 1868년 Hichlin 사건 판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본격적으로는 1933년 소설가 제임스 조이스의 유명한 소설인 〈올리시즈〉를 간행한 출판사가 음란물 죄로 기소되었는데 미국 연방지역 재판소 및 연방순회재판소에서는 이 소설이 부분적으로는 외설적인 구절이 있지만 작품 전체로 보아서 또한 그 주제로 보아서 음란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담당 판사의 판결문 요지는 작가의 외설적 의도여부와 그러한 경우가 없을 경우에는 전체로 본 작품의 경향 내지 영향이 그 시대의 통상적인 독자에게 성적 충동 또는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가의 여부가 음란성의 판단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올리시즈 판결원칙은 미국법원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 즉 한 작가가 작품을 책으로 출간하면 그 책은 이미 작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사회의 독자가 그 책의 내용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작가가 서문, 후기 등에서 주장하는 동기 및 목적 등에 관한 변명은 음란성 판정여부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음란성

판단의 “객관설”로 세계 각국의 법원은 사회일반의 성에 관한 도덕감정의 순결성 보호라는 목적에 비추어 이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1957년 로스(Roth)사건의 판결원칙은 음란성의 기준선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준 사례로 인정된다. 1957년 Samuel Roth는 장사를 목적으로 섹스 잡지 및 도서를 우송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상고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로스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대법관의 판결문 요지는 3가지로 나뉘어진다. 1) 작품이나 자료의 지배적인 테마가 현재사회의 평균적인 보통사람들에게 섹욕적인 흥미를 자극할 때, 2) 현재사회의 기준을 명백히 침해하는 성적자극물이어야 한다. 3) 음란으로 판정되는 성적자극물은 “보상할만한 사회적 가치가 전혀 없는 것”이어야 한다. 로스사건 판결은 포르노의 음란성 판단기준을 성인과 청소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배제한 최초의 원칙으로서 음란물을 포르노와 일반적인 성 표현물보다 좁은 개념으로 규정하였다. 또한 이 판결은 어떤 자료가 “사회적인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음란으로 규정함으로써 문학이나 예술, 학문의 자유의 운신의 폭을 대폭 넓혀준 것을 평가되었다.

긴스버그(Ginsberg)사건 판결원칙(1968년)은 1968년 긴스버그가 뉴욕 주정부로부터 음란물 죄로 처벌받은 건에 관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청소년용은 성인용과 구분하여 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며,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묘사물을 반포, 판매한자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반포·판매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주법제정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청소년 보호를 위

해서는 강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의도이다.

1973년 밀러(Miller)사건은 Marvin Miller라는 시민이 섹스도서와 섹스필름을 선전하고 광고 부로슈어를 레스토랑 주인에게 발송한 것을 이를 주인이 고발하여 주당국으로부터 처벌받은 후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이다. 이 밀러 판결에서는 음란의 판정기준이 국가전체의 단일기준이 아니라 주나 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예술작품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예술 흉내만 낸 것은 음란으로 판정되며 작품 전체로 보아 진정한 문학적, 예술적 가치를 가져야 음란으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후 각국의 법원에서 “실제적인 성행위가 아니더라도 암시적인 성행위 묘사, 동성연애, 수간, 가학-피학증” 등이 악성 포르노로서 음란에 해당된다는 판시가 나왔다.

이상에서 보는 것처럼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지적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음란물에 관해서는 유해한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차원에서의 보호장치를 구성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도서관계의 입장 표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6.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침해 사례

아래의 사례들은 미국의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했던 사서와 이용자간의 검열의

문제를 여러 소송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이들을 보면 미국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알 수 있다. 1982년에 미국에 있는 Island Tree School이라는 학교에서 “반미국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유대적이거나, 분명한 외설을 담고있는(anti-American, anti-Christian, anti-Semitic and just plain filthy)” 책들을 도서관에서 없애는 일이 발생했다. 이것은 소송으로 발전해서 이른바 Pico 판결이라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원칙을 만들게 되었다. “비록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사상에라도 접할 권리”(right to receive ideas)가 보장되어야 하며, 학교의 관리자들은 “편협한 집단적 사상에 대한 억압”(narrowly partisan suppression of ideas)으로 책을 제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6년 후의 다른 판결에서는 학교교장을 비롯한 운영자가 교육적 견지에서 판단하여 학생신문을 포함하여 각종 커리큘럼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의 사건에서는 학교에서의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 검열은 위의 두 판결을 감안하여 진행되었다(Krug, 1995).

1989년 미국 미시시피주 옥스퍼드 공공도서관은 보수적인 종교적 여성조직인 ‘미국을 생각하는 여성(Concerned Women for America)’으로부터 도서관에서의 집회실 사용을 요구받았으나 특정 종교단체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도서관 내부규정을 근거로 이용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이 여성조직은 소송을 제기하여 제5 순회구 연방재판소로는 도서관의 집회시설은 제한된 공공의 광장으로서 모임자체의 중

교적 연설내용이 어떠한지간에 모든 다양한 모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건 이전에 과격한 인종적 편견이나 윤리적 표현을 주장하는 집단에 대한 도서관의 장소제공과 관련하여 반대론자들의 항의를 불러온 사건들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서관의 대관원칙은 가능하면 사회적 폭력을 동반할 가능성이 있는 인종적, 종교적, 윤리적 표현의 장으로 이용되는 것을 거부하는 관례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판결 이후 이러한 관례는 파기되었다.

미국에서의 도서관 이용자 <클라이머 대 모리스타운 공공도서관 사건>은 노숙자의 도서관 이용권리에 대한 판결이다. 1992년 미국 제3순회구 연방 공소재판소는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공도서관이 이용자 규정을 부당하게 어기고 도서관 출입을 거부하여 노숙자 클라이머의 정보접근권이 부당하게 침해당했다는 소송을 맡게 되었다. 거리의 노숙자인 클라이머는 불결한 냄새와 더불어 더러운 옷차림을 한 상태에서 다른 이용자들을 기분 나쁘게 노려보아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사서로부터 도서관의 사용을 금지받았다. 이에 클라이머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언론에서는 이러한 이용자의 행동에 대한 위법여부 판단과 함께 도서관 이용을 제한한 사서의 처분이 합당한 것이었는가의 여부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정작 사건의 심리에서는 규정을 어긴 이용자의 행동이나 사서의 처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러한 규정이 헌법에 적법한 것인가의 여부에 초점이 두어졌다. 도서관측 역시 이용자에게 요구한 행동수칙이 헌법상 허용될 수 있는지를 법으로 가려달라고 재정신청을 하였다. 이 사건은 2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는데 처음 연방지역재판소에서는 불결한 냄새를

피우거나 노려보는 행동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이용규정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대해 도서관측은 즉각 이를 제3 순회구 연방공소재판소에 항소하였는데, 상위법원의 판결에서는 공공도서관은 모든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합리적으로 이용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도서관의 권리를 인정하고, 도서관 이용에 방해가 되는 행동에 대한 제재규정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권리가 소중한만큼 타인의 권리도 소중하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 하는 공공구역의 특성상 모리스타운 공공도서관측이 적용한 이용자 규정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재판선례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의 이용자 규정운영과 관련한 유력한 준거지침의 단서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계기로 미국도서관협회와 지적자유위원회 사무국에서는 도서관권리선언문의 전시공간과 집회실에 대한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1991년 '전시공간과 게시판'과 '집회실'에 대한 해설문으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도서관협회의 입장을 구체적 지침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사무국에서는 1993년 '이용자 행동과 도서관 이용에 관한 정책 및 절차의 개발에 관한 지침'을 정책으로 천명하는 계기로 삼았다.

7. 도서관 봉사철학과 지적자유에 대한 견해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 봉사 철학에 끼친 천부

인권적 자연권 철학의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에서 다룬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이러한 철학사상을 통해 도서관은 민주주의 이상과 가치를 구현하는 기관이 되었고, 특히 이는 19세기 미국 공공도서관 이념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도서관에서 제공되는 봉사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들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철학적 원리원칙을 옹호하는 실행의 장소로 이는 십분 발휘되고 있다. 그러한 철학사상 중 특별히 많은 부분을 미국도서관협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Handbook of Organization 중의 정책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일반적 의미로서 지적자유 개념은 언론, 출판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기본권적 개념과 관련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외부의 권력적 개입, 즉 자유로운 사상의 전달매체로서의 출판물에 대한 검열에 저항하는 것을 동기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초창기의 지적자유는 이러한 기본권적 사상의 자유를 제약하는 형식으로서 출판물에 대한 검열문제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오늘날의 지적자유는 단순히 출판물에 대한 검열뿐 아니라 사상과 지식의 유통을 제한하는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제약에 저항하는 적극적 의미로 확대되었다(정현태, 1999).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연구업적은 미국도서관협회 내에 설치된 지적자유사무국에서 발행한 <지적자유편람>을 들 수 있다. 1974년에 초판이 나온 이후 1996년에 제 5판이 나온 이 편람에서는 그동안의 도서관 권리선언과 관련된 역사적 해설과 함께 각국의 선언과 정책, 해설 등을 정리하고 있는 것은 물론 검열에 대한 현장에서의 법률적, 실천적 대처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편람의 내

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모든 도서관자료에 대한 이용자 접근에 관한 문제, 둘째, 자료선정과 관련한 사서직무의 건전성에 관한 문제, 셋째, 이용자 비밀보호에 관한 문제, 넷째, 사서의 개인적인 민주적 사회활동 참여보장과 사생활 추구권에 관한 문제, 다섯째, 공공시설로서의 도서관과 사회변화 및 교육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관한 문제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초창기에는 단순히 출판물에 대한 검열 반대에서부터 근래에는 도서관 활동 전반의 정체성, 즉 도서관의 기본철학인 이용자의 자유로운 자료접근의 이념을 훼손하는 모든 제한적 규제와 외부적 개입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도서관이 지적자유를 기본철학으로 하게 되어 도서관계의 공동선언으로 발전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1930년대 이전까지는 미국의 도서관계나 사서의 검열에 대한 태도가 매우 모호하였다. 당시 일부 사서들은 도서관의 교육적인 교화기능을 지나치게 강조하였으며 사서의 윤리적 사명감이 지나쳐서 책에 대한 검열자로서 또한 공공도서관의 계도적 입장에 대해 많은 사서들이 지지를 표명하였다. 1930년대는 전 세계가 대공황의 경제적 시련 속에서 점차 새로운 사회의 전망에 대한 정치 이념적 대립양상으로 혼란을 겪던 시기였다. 또한 독일, 일본 등의 제국주의적 군부지지자에 의해 우익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다른 한편으로 구소련의 신경제정책의 혁신적 생산력에 고무된 진보세력의 변혁논의가 세력을 확산해가는 가운데 각국내에서 패권적 정치세력에 의한 검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나치스에 의한 대규모적인 분서사건이 사회적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30년

대에 미국도서관계의 지적자유에 대한 공론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은 존 스타인 백의 유명한 소설인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에 대한 일부 도서관의 선정거부 현상에서 시작되었다. 이 소설은 30년대 공황기 미국사회의 혁신주의 노동운동의 실상을 묘사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미국 내 많은 공공도서관 자료선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제되었다. 소설내용에 대한 거부감으로 자료선정을 거부하는 공공도서관이 많이 생기자 당시 미국도서관협회는 이를 명백한 검열행위로 간주하고 도서관 자료의 선정에 있어서 정치이념적 의도를 개입시켜서는 안된다는 기본입장을 표명하였다.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의 권리선언' 채택은 이러한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검열현상에 대한 반대입장을 도서관계의 공식입장으로 확인한 최초의 선언이었다. ALA의 '도서관현장'은 1939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후 개정을 거듭하였다. 도서관선의 원칙 및 집회실의 평등한 이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장을 채택하여 각 도서관의 관리단체가 스스로의 운영방침으로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1944년에는 파시스트 단체를 취급한 Carlson의 "Under Cover"와 흑인 여성과 백인남성의 연애를 그린 Smith의 "Strange Fruit"도 문제되었다. 도서관 장서로서의 적합여부가 격렬하게 논의되었는데 특히 "Under Cover"는 연방의회에서도 논의되었다. 지적자유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하여 현장 제1조에 "사실에 입각하여 정당하다고 할 수 있는 도서가 일부인사의 항의로 도서관으로부터 배제 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논리의 1항을 추가하였다. 이 선언은 1948년에 전면 개정되어 오늘날의 권리선언의 모체가 된 도서관 권리선언

(Library Bill of Rights)의 출발점이 되었다. 1948년에 현장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는데 이때까지의 현장이 공공도서관에 적용되었던 것을 모든 도서관으로 범위를 넓히고 검열에 도전하는 도서관의 책임을 명기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에 투쟁하기 위하여 과학, 교육, 출판 등의 관계단체와 협력할 것을 명시하게 되었다. 이 선언에 이르러 구체적으로 당파나 신조상의 반대를 이유로 도서관자료로부터의 제거를 금지하는 것은 물론 일체의 검열에 대한 반대를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식입장으로 천명하고 있다.

초기의 선언에서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위주로 하였으나 이후에는 사서들의 공정한 자료수집 및 제공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곧 이용자의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라는 주장아래 사서와 도서관 자체의 권리를 옹호하는 내용으로 진전되어 결국 이용자와 도서관 활동 전반에 대한 도서관의 권익을 주장하는 것으로 확대되었다. 1951년 도서관권리선언에 대한 첫 번째 해설문으로 영상, 음성매체에 대한 검열을 반대하는 '레이블링 성명'이 발표되었고, 1961년에는 이용자의 권리조항을 정식으로 선언문에 추가한 개정선언이 채택되었다. 이어 1967년에는 해석의 논란이 있는 문구에 대한 수정과 함께 연령에 대한 제한철폐를 명시한 두 번째 개정선언이 채택되었다. 1980년에는 그간의 변화된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문제가 되었던 전문의 '민주적 생활양식의 교육기관'이라는 표현을 대신하여 '정보와 사상의 광장'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도서관의 성격을 재정하였다. 1980년의 도서관권리현장(Library Bill of Right)의 개정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적 자유를 유지하는

역할을 1967년 헌장에 있었던 “민주적인 생활방식을 교육시키는 기관”에서 “정보와 사상의 광장”으로 고쳤다. 여기에는 다수가 싫어한다 해도 소수의 견해가 경청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으며, 도서관은 반민주주의의 입장에 있는 사상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도서관은 현재와 역사적으로 논쟁이 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모든 견해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모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자료들이 당파적이거나 어떤 신념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되거나 추방되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도서관은 검열에 과감히 맞서서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도서관은 자유로운 표현이나 사상, 이념에 자유로운 접근을 방해하는 것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80년 개정선언 이후는 개별 사안에 대해 미국도서관협회 차원의 정책을 천명하는 방식으로 권리선언 본문에 대한 별도의 해설문을 채택해 오고 있다. 1981년의 미국도서관협회윤리규정(ALA Code of Ethics)에서도 사서는 도서관 자료를 검열하려는 모든 단체나 개인의 노력을 저지해야 하고, 각 이용자의 비밀 보장권리를 지켜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ALA Handbook of Organization 중의 Selected ALA Policies에서 도서의 어떤 부분이나 도서관 자료의 어떤 것이라도 삭제되는 것은 도서관 헌장에 위배되며 보존과 이용통제를 위해 도서관자료 중 어떤 책이나 어떤 주제분야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검열의 한 형태가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 특정 도서관자료를 편견적인 표시를 해주거나 분리시키는 것은 도서관헌장에 위배되며, 지역사회 일부인사들에 의해 논쟁이 되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자료들을 제거시키기

위한 편리한 수단으로 도서관자료의 평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Bopp and Smith, 1991).

8. 인터넷 정보의 음란물 검열과 이에 대한 도서관의 견해

각종 매체의 발전으로 정보의 생산이 폭증하고 있는 정보사회에서는 정보를 받을 자유, 즉 ‘알 자유’의 개념은 공권력에 집중된 독점정보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접근의 권리를 요구하는 ‘알권리’ 개념으로 발전하였고, 국정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도화한 ‘정보공개제도’와 ‘언론매체 활동과 관련한 ‘정보접근권’, 시민교육과 관련한 ‘독서의 자유’ 등으로 확대되었다.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기관으로서 도서관 정보자료 수집과 제공과정에서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약 도서관이 자기규제에 의해 자료수집과 제공의 역할을 소홀히 할 때에는 시민의 알 권리와 도서관 이용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문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정보사회에서 도서관의 역할은 정보공개제도의 전달경로로서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선의 목적으로 한다고 천명하였다. 정보사회의 특징적 현상의 하나는 정부기관의 정보 독점이 심화되고 개인은 수동적 입장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입장이 되어 균형잡힌 정보의 상호교류가 잘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의 건전한 균형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측의 사회적 공공성이 강조되고, 전달받는 측의 알 권리로써 정보접근권이 요구된다. 모든 자료에 대

한 이용자 접근권을 강조한 지적자유개념은 모든 국민의 정보접근권을 도서관 활동에서 보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선언적이며 또한 구체적이다. 도서관의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정보접근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시도한 중요한 문헌은 1986년 미국의회의 '정보접근의 자유와 형평성에 관한 위원회'의 결과보고서인 일명 'Lacy Report'가 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국민의 정보에 대한 자유롭고도 평등한 접근권에 대한 기본적 지침을 검토하면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권고를 하고 있다. 즉 보고서는 인쇄매체 환경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중의 전자정보에 대한 접근경로로서 도서관의 역할을 중요하게 확인하고 이에 따라 전자정보의 보급시설로서 도서관 시설의 정보화 투자, 사서에 대한 기술 교육, 이용자 정보화 교육 등에 과감히 투자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또한 정부의 국정정보에 대한 공공적 접근경로로서 기존의 전국적 도서관 기반체제를 적극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정현대, 1999).

도서관의 지적자유가 초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수동적인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면 최근에는 모든 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철폐를 주장하는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 도서관 자료뿐만 아니라 인터넷 정보자원 이용과 관련한 각종의 규제적인 제한 철폐에 대한 도서관의 입장은 명확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 네트워크상 특히 도서관이 참여하는 인터넷상의 통신검열과 관련하여 가장 부각되는 쟁점은 각종 여과(차단) 프로그램(Filtering Software)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다. 특히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상업용으로 보급되고 있는 여과 프로그램들은 한편으로 건전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보이용을 제약하는 검열적 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서관계를 비롯한 자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로부터 비난받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려는 부모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을 받고 있는 양면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도는 한편으로 국민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에 대한 침해와 권력적 개입에 의한 통신상의 검열이라는 역기능적 측면이 부각되지만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서 정보이용에 대한 윤리적 지침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으로서 도서관 정보봉사의 진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통신품위법을 비롯한 인터넷 정보에 대한 검열입법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대법원은 지난 1997년 인터넷상 음란물 규제를 주요내용으로 제정된 "통신품위법"에 대해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은 "통신품위법(CDA)의 음란한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 조항은 미합중국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다. 미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음란한(indecent)"과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이란 표현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위반했는지의 여부가 검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비록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ct)이 인터넷 통신업체에 대한 음란물 여과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모든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음란물 차단을 목적으로 한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지만 미국 대

법원의 판결 요지는 새로운 통신 매체로 등장한 인터넷에서의 언론 자유는 책이나 신문같은 활자매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음란물에 해당하는 아동포르노물 등을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는 여전히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그동안 인터넷 언론자유를 주장해온 사회단체와 출판업자들, 컴퓨터 산업종사자들은 이 결정에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반면 포르노 규제를 주장해온 시민, 종교단체 회원들은 판결 직후,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이 음란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것을 우려하였으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94%가 대법원의 이 판결이 잘못된 것이고,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종류의 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당시의 대통령인 클린턴도 통신품위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는데, “미국 행정부는 통신품위법(CDA)과 그 밖의 다른 형법전에 인터넷과 다른 매체를 통한 음란물(obscenity)의 전송을 금지하는 규정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미성년자에게 아동포르노물을 전송하는 것과 성적 행위에 종사하도록 유혹하는 인터넷의 사용을 범죄시하는 연방법을 엄격히 시행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미국 의회도 새로운 통신품위법(CDA)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회는 온라인에서의 음란, 폭력물 등의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위헌판결을 받은 통신품위법(CDA)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새로운 법안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음란, 폭력물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할 예정이라고 천명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학부모들과 행정부, 입법부는 검열이라는 형식을 가진 규제안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정보, 통신, 미디어, 소프트웨어 회사, 도서관계, 민권단체들은 이와는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터링 소프트웨어들은 그 필요성이 현재 미국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다. 그 이유는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술적 검열을 한다면,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서도, 미국의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탄생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필터링 소프트웨어는 인터넷상의 정보중 사용자에게 부적합하다고 느껴지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소프트웨어와 그 기술을 통칭한다. 그 중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은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필터링 방식에 기반한 것으로 이미 인터넷 익스플로어에는 제공되고 있는 기능이지만 웹브라우저 자체가 등급 및 검열 기능을 하는 방식이다. 인터넷 내용등급 기술표준체계인 PICS 필터링 방식은 HTML 문서에 등급을 지정하도록 하여 지정된 등급레벨에 따라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PICS 등급정보는 HTML 태그처럼 문서의 머리부분 HTTP Header나 Meta TAG를 이용하여 등급정보를 지정하게 된다. 문서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문서의 머리부분에 음란외설 등급에 해당하는 문서임을 지정하게 되면 PICS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음란외설 등급된 문서로 인식하여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위의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인터넷 자원에 접근하기 전에 등급 허용가능성을 문의

하고 각 문서마다 매겨진 등급정보를 읽어 허용 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서비스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PICS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폭넓은 기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 어떤 집단이나 기업이 그들의 소속원들이나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또 제공받는 정보를 사용하기 쉬운 방법으로 라벨링(Labeling)하는 것을 도와주고, 각 개인들에게 정보의 선택과 접근급지를 지정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공해 준다. 많은 PICS 옹호자들은 이 라벨링은 아주 자발적인 것이고 이것이 강제적인 규정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에서는 등급제의 도입과 필터링 소프트웨어의 사용은 필연적으로 검열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공식적으로 정부에 제기했다. 또한 정보제공자의 자신의 정보의 등급이 부적절하게 매겨놓는 것을 범죄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ACLU의 주장은 인터넷도 인쇄물과 같이 취급받아야하며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통한 등급제나 제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PICS는 초기의 기술적 순수성과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과 청소년 보호기능이라는 긍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는 하나의 검열의 도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른 여러 부정적인 모습이 염려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ICS는 현실적으로 학부모를 비롯한 많은 집단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ACLU에서는 하나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터넷의 어떤 사이트에 접속할지에 대한 결정과 책임은 결국 이용자와 부모의 몫이므로 이의 판단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맡겨야 한

다. 둘째, 정보산업에서 주장하고 있는 PICS의 표준화나 등급 이외에 금지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셋째, 차단소프트웨어(block software)를 설정할 권한은 소비자가 가져야 한다. NCA patrol과 같이 특정한 접속금지 사이트를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국가차원의 어떤 개입이나 검열이 있어서는 안된다. 다섯째,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 미국시민자유연합(ACLU)이 말하는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의 선택이 개개인에게 맡겨지는 자율규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루에 전세계적으로 수천개씩 쏟아져 나오는 포르노성 사이트들을 일일이 모니터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처벌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서 사용자의 자율규제를 통제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는 컴퓨터 및 인터넷 사업 종사자들로부터 긍정적으로 부각되어 새로운 인터넷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97년 위헌 판결을 받았던 미국의 정보품위법이 규제범위를 축소하면서도 인터넷 포르노로부터의 어린이 보호 '성격을 담은 법안 CDAII'로 변형되어 지난 2000년 하원을 통과한 것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표현의 자유'를 중시한다 하더라도, 어린이·청소년 보호 차원에서의 접근 차단장치 필요성을 쉽게 간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 II는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넷의 음란물 배포 규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통신품위법(CDA, 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제안한 공화당 댄 코츠 의원에 의해 발의된 법으로, 본

래 정확한 명칭이 없었으나 미국시민자유연맹 등 통신품위법에 반대하는 단체들에 의해 통신품위법Ⅱ라고 명명되었다. 유사한 법으로 공화당 마이클 옥슬리 의원이 제안한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 Child Online Protection Act)' 있는데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대통령의 인준을 받아 2000년 11월 발효되었다. 이 법은 인터넷 업체들이 13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외설물 및 외설 자료 제공을 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위반시 최고 5만 달러의 벌금과 최고 6개월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이용자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제한은 각주마다 실정을 달리하고 있으나 현재 미국의 사정이 CDAII, COP법안과 여러 가지 예에서 보는 것처럼 최근에 와서 상당히 보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화당 지배의 의회를 중심으로 미국사회에 급격하게 번지고 있는 보수주의 물결은 흔히 적자생존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 다윈주의'로 표현된다. 강자가 살아 남아야 하며, 약자는 강자가 되도록 정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힘을 키우라는 것이다. 사회적 다윈주의를 뒷받침하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앨빈 토플러 등 미래학자들이 중요한 몫을 차지한다. '제2의 물결'인 산업의 시대에 나온 정책들인 정부의 적극적 역할, 사회보장제도, 경제성장 정책 등은 '나쁜 것'이며, 따라서 '제3의 물결'인 정보의 시대에 걸맞는 정책들인 작은 정부, 교육의 사립화, 기업에 대한 자유방임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거대한 보수화의 물결은 검열이라는 새로운 논쟁을 미국에서 생산하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이 통신품위법(CDA)의 제정에 찬성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여

미국 도서관계에서도 각각의 처지에 따라 다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수적인 분위기의 주에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유해 음란물 사이트의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기 위해 여과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가 하면, 다소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주에서는 공공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인터넷 검색을 장려하고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검색을 제한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미국도서관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을 제약하는 여과프로그램의 설치나 직원의 간섭을 금하고 있으며, 실제 미국의 공공도서관에서는 사생활권 침해를 우려하여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칸막이를 설치하거나 타인이 쉽게 검색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자리를 배치하고 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라벨링을 "어떤 특정한 정보에 대해 편견을 가진 분류를 정해주거나, 편파적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격리시키는 관행"으로 정의하면서, 라벨링은 검열의 도구와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비록 이용자의 권리를 고양하기 위해 선언적으로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자유로운 검색을 주장하지만 이제는 실제적인 시행단계에서는 미성년자를 비롯한 청소년을 음란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보다 융통성있는 협회의 입장 조절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이다.

9. 결론 및 제언

이상에 걸쳐 본 논문에서는 도서관 지적자유

의 철학적 기초라 말할 수 있는 서구의 언론에 관한 제 이론들,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 밀의 〈자유론〉, 플라톤의 이론, 미국도서관협회의 권리장전 등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이론은 1939년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권리헌장〉으로 채택된 이후 도서관의 지적자유를 고양하고 검열에 반대하는 확고한 도서관 철학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도서관의 〈지적자유편람〉으로 계승되어 왔다. 그러나 도서관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에 대한 확고한 지지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자원이 대두되면서 상당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란물 판단기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보내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여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음란물이 인터넷상에서 범람하는 현실에서도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신장을 위해 검열에 반대하는 도서관계의 입장은 인터넷 자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자원이라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와 지적자유를 고양을 위해서는 검열과 레이블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과 정부당국의 조치는 RICS라 알려진 필터링 여과장치에 의해 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정보를 필터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자유시민연합에 의해서도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97년에 위헌으로 판정된 통신품위법(CDA)이 통신품위법(CDA)II라는 이름으로 상하원에 의해 인준된 상태이다. 이제 도서관계에서도 전통적으로 지향해 온 지적자유와 검열에 대한 반대입장을 유

지하는 것과 더불어 인터넷 음란물에 대해서는 좀 더 전향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은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에 대한 좀 더 많은 숙고와 연구가 요청된다고 하겠다.

그에 앞서서 지적자유에 대한 인식과 자각이 매우 취약한 한국에서는 좀 더 다른 양상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된다. 먼저 도서관에서 지적자유를 신장하고 도서관 봉사의 철학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사실은 도서관 자료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과 함께 자료선정에 대한 원칙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이다. 이에는 사서의 자료선정 작업을 위한 업무편람으로서만이 아니라 선정과정에 관심을 갖는 이용자와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장서개발의 발전전략을 제시하는 실무지침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문화된 자료선정지침에서 지적자유 철학이론에 근거하여 검열에 반하는 도서관의 입장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물론, 자료선정위원회의를 실제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위치에 있는 외부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시민사회의 기본권으로서 도서관 활동에서 지적자유를 기본원리로서 천명하는 것은 도서관 기반철학에 대한 이해를 다시금 확인해 보는 작업이며 국가적 입장에서도 이의 천명은 현대 사회의 중심에서 활동하기를 기대하는 우리 국가의 시대적 사명에 걸맞는 중요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제는 도서관 활동의 지적자유를 우리도서관의 이념으로서 정당하게 인정하고 건전

한 도서관 윤리로서 선언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정책담당 기구를 중심으로 '도서관 권리선언' '도서관 자유선언' 등에 관한 정책적 현안들에 대한 포괄적 작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999년 말 국무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의 음란물 접속 차단을 위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여과프로그램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겐 역시 시민단체와 학계를 중심으로 정보접근권에 대한 검열의 논란이 있다. 이 기회에 시민사회가 우리보다 빨리 형성되고 검열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해온 선진국에서 유해 음란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품위법(CDA)II와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COPAct)을 제정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김향신. 1983. 미국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도서검열에 관한 고찰. (상). 『도협회보』, 24(1): 2-8.
- 김향신. 1983. 미국에 있어서 아동 및 청소년 도서검열에 관한 고찰. (하). 『도협회보』, 24(2): 8-15.
- 이인호. 1997. 표현의 자유와 검열금지의 원칙. 『법과 사회』, 7: 247-275.
- 정현태. 1999.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편, 1993. 『외국의 간행물윤리제도』.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홍준형. 1997. 표현의 규제와 법적규제의 한계. 『문학과 사회』, 37(봄): 55-81.
- Asheim, L. 1953. Not Censorship but Se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28(1): 63-67.
- Asheim, L. 1984. Selection and Censorship: A Reappraisal. *Wilson Library Bulletin*, 58(3): 180-184.
- Bopp, R.E. and L. Smith. 1991. *Reference and Information Services*. Englewood, CO: Libraries Unlimited. 박은자 역, 참고정보봉사론. 1996.
- Busha, C.H. 1972.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The Climate of Opinion in Midwestern Public Libraries. *Library Quarterly*, 42(3) : 283-301.
- Fiske, M. 1959. *Book Selection and Censorship*. CA, L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lpenny, M. 1953. Books in Trial in Texas. *Library Journal*, 78(13):

- 1179-1184.
- Hopkins, S.M. 1996. The Library Bill of Rights and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Library Trends*, 45(1): 61-74.
- krug, J. and R.L. Funk. 1995. Pressure Group vs. Library: Polices, Procedures, Public Relations as Defenses. *Wisconsin Library Bulletin*, 69(2): 66-68.
- Niosi, A.E. 1998. An Investigation of Censorship and Selection in Southern California Public Libraries: A Qualitative Study. *Public Libraries*, 37(5): 310-315.
- Rorty, J. 1955. The Libraries in a Time of Tention. *Commentary*, 19(July): 30-37.
- Serebnich, J. 1982. Self-censorship by Librarians. *Drexel Library Quarterly*, 1982(winter): 41.